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74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박지혜 · 윤후덕 · 박 정  
주철현 · 조인철 · 안도걸  
권향엽 · 김성원 · 임미애  
장종태 · 손명수 · 이재강  
의원(12인)

제안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발전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부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주요내용

- 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안 제6조).
- 나.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함(안 제27조).
- 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1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 바. 반환공여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함(안 제3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 및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적 개발, 투자 촉진, 규제 특례 및 재정·조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등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말한다.
4. “개발 기본계획”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5.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산업단지 조성, 주거·문화·복지 시설 구축 등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등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기본계획과 개발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장기간 개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장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1절 추진기구 등

제6조(반환공여구역개발청의 설치 등) ①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등 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개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2. 개발사업의 직접 시행 또는 위탁 시행

3. 제31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5. 개발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지원
6. 개발사업이 사업지역 내 토지 및 시설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
7.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개발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개발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개발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반환공여구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구역별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제27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5. 제31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개발청장
  3. 경기도지사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4항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한다.
-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⑦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반환공여구역 개발계획 등

제9조(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청장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3. 토지이용계획
4. 기반시설 조성계획

5. 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구역 내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반환공여구역 내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개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공여구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환공여구역별 개발계획(이하 “구역별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역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구역별 개발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3.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4.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8. 재원조달계획
  9. 개발지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개발청장은 구역별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역별 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발청장은 구역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구역별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개발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역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개발청장은 구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별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역별 개발계획이 승인·변경승인된 때에는 해당 구역별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경관법」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5.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6.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②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구역별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역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별 개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5.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제1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8.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2. 경관 및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개발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절 사업시행 등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 개발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4.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제1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개발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역별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구역별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른 구역별 개발계획과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16조(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총괄·관리 등) ① 개발청장은 반환공여

구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반환공여구역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환공여구역별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개발 기본계획, 구역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구역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자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개발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신고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 시행의 허가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

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

용수도 설치의 인가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4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허가등의 협의
4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4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발청장은 관계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개발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계법률등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률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반환공여구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개발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발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 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

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개발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가격결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서와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증으로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반환공여구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다.

제25조(보고·검사 등) ① 개발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반환공여구역 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업의 준용) 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철도·항만·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개발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 제3장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제27조(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의 설립) ①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수익사업의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④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사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나.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라.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바. 반환공여구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

2.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다. 그 밖에 개발청장이 승인한 사업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지구의 조성

4.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9조(감독) ① 개발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개발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4장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1조(특별회계의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반환공여구역 토지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기반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

는 용자

3.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4.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33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장 거점 반환공여구역의 지정 등

제35조(거점 반환공여구역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을 거점 반환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은 해당 토지의 반환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반환공여구역이 각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넘어 광역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공공시설 기타 공익적 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익시

설”이라 한다)의 정비를 포함한 시가지의 계획적 개발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의 거점이 된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구역

2. 반환공여구역이 제1호에 규정하는 구역과의 상호 관계를 특히 고려하여 공익시설의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반환공여구역에서의 거점 기능이 보다 고도화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그 면적이 50,000m<sup>2</sup> 이상인 일단의 토지에 한한다)의 구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인 부지(이하 “반환예정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구역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은 해당 지정에 관계되는 구역이 제2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반환예정구역의 반환을 미국 합중국으로부터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에 관계되는 구역에서 일체적인 토지 이용이 전망되는 경우
2. 해당 지정에 관계되는 구역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이미 반환이 합의되어 있는 경우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 반환공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 반환공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여건이 변경하여 거점 반환공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정한 거점 반환공여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⑦ 거점 반환공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거점 반환공여구역 이용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거점 반환공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거점 반환공여구역에서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이용계획(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국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거점 반환공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거점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이용계획을 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거점 반환공여구역 정비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점 반환공여구역에서 실시하여야 할 사업 및 사업 시행 주체에 관한 사항
  3.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거점 반환공여구역 정비에 필요한 사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이용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국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⑨ 국가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장 보칙

제37조(반환공여구역의 환경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등 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조사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토양오염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정화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공여구역개발청의 설립준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공포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하여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